

# 노무관련 상담사례 ⑩

자료제공 / 노동부

## 연차휴가 발생 · 사용 · 수당지급시기

**Q** | 연차휴가의 발생시점과 사용시점 그리고 수당 지급시기는?

**A** |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다음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 취업규칙 제17조2(연차휴가) ]

- 가. 1년간 8할이상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15일을 부여한다.
- 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월간 개근시 1일을 부여한다.
- 다. 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일수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② 인사규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근속연수의 계산은 일당직 또는 계약직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한다.(신설 '96.4.20)
- ③ 본사 업무수행상 제1항의 휴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휴가일수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휴가에 갈음할 수 있다.
- ④ 연차휴가는 근무일을 반일 단위로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08.8.27)

는 그 다음해 첫 임금지급일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임신중의 여성근로자 근로전환 배치 요구시 그 배치시점은

**Q** |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경이(輕易)한 근로로 전환요구시 언제부터 배치하여야 하나?

**A**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의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몇일 이내에 전환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

동 조항이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치전환 청구가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

**Q**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판단기준은?

**A** | <동일가치노동>이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①기술 ②노력 ③책임 ④작업조건 ⑤기타 등

의 기준으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을 말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가치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위 4가지 기준외에 해당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모두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비교되는 남녀근로자의 노동이 외형상 비슷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에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 등에 차이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경우는 임금의 차별로 볼 수 없다.

- 기술 :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
- 노력 : 업무수행에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힘의 작용
- 책임 : 업무에 내재된 임무의 성격, 범위,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 작업조건 :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 계약직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여부

**Q** | 계약직 여성근로자도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A**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여성근로자들에게도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산전·후 휴가 실시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산전 후휴가 부여 의무가 없게 된다.

## 상여금지급기준

**Q** | 연35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취업규칙에 나와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 라고 하여 3개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A** | 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 신청자격

**Q**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남·여 근로자가 동시 신청가능여부, 최소 재직기간이 필요한지)?

**A** |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남녀 불문)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자기간이 1년 미만인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